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 · 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 의무화 등〉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26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1.
3. 회부연월일 :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후 위기시대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게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

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투자·출연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 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 ----- ----- <u>위하여</u> ----- ----- ----- 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② ----- ----- ----- <u>위하여</u> ----- ----- ----- ----- -----

현행	개정안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u>설치하게 할 수 있다.</u> <단서 신설> 1. ~ 6. (생략) ③ (생략)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u>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u> 하여야 하는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u>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u>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 -----<u>의무를</u>----- ----- ----- ----- -----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¹⁾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아래 표 참조)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²⁾(이하 “공공기관등”)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1) 정부조직개편('25.10.)에 따라 개정안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는 경우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투자권고 대상 신·재생에너지 사업 목록(법 제10조 각 호)]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 1. 28.>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런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 더욱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권고를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의 건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상 제12조제2항 각 호)

물 신축·증축·개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먼저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투자 권고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해당 산업의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정부가 2038년까지 2024년에 비해 태양광 발전설비는 약 3배, 풍력 발전설비는 약 18배 수준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³⁾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인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

3)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년 3월)에 따른 보급 목표임.

< 203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

(단위: MW, 정격용량 기준)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매립가스	연료전지	IGCC	소계
'24년	28,150	2,293	1,909	256	1,852	1,148	346	35,952
'32년	61,739	24,868	1,909	256	1,852	2,821	346	93,790
'38년	77,203	40,671	1,909	256	1,852	3,621	346	125,857

자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3.)

면이 있다는 점과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조사·통계작성, 연구·개발, 교육·홍보, 국제협력 및 국제표준화 지원, 성능평가·인증·사후관리 등은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 투자권고 대상 신·재생에너지 사업 목록(법 제10조 각 호)

구 분	사업내용	시행기관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 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보급·산업통계) 국내 신재생E 보급 및 산업 현황 파악을 통하여 기본계획 등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실증연구 기반 구축 등 에너지 기술개발 분야의 기획평가 관리 및 성과확산 지원 중	에너지기술평가원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공급의무화제도) 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보유사 대상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화제도 운영('12년~)	한국에너지공단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KS인증) 제조업체의 생산·품질·사후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하고 효율, 성능·내구성 등 제품 성능검사 후 인증서 발급 (보급지원)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자가용 신재생E 설비 설치비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기반 조성 (신재생E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인증고도화설비 인증 기술기준 제정 및 시험설비 지원, 공용화 및 표준화설비 부품 공용화, 기술기준 및 인증시스템 국제표준화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재생에너지연구소) 태양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저장기술 중점 연구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세부 연구단 및 연구실 운영 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다자협력)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회의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의제 발굴 (양자협력) 양자간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기반 구축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으로 공공기관등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다만,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⁴⁾ 등에 따라 현재에도 공공기관등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하여 일정 수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시행령 [별표2])]

해당연도	‘20~’21	‘22~’23	‘24~’25	‘26~’27	‘28~’29	‘30~’
공급의무비율(%)	30	32	34	36	38	40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垓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투자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설치의무화 제도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24호)⁵⁾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⁶⁾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5)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는 내용임.

6) 2024. 8. 21. 발의되어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임.